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3. 주요내용

- 가.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나.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제19조
의5 신설)
- 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및 지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6, 별표
제1호 신설)
- 라.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및 의의절차 마련(안 제19조의7,
제19조의9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법 제29조의3의 통합돌봄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행동문제 등으로 통상의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

2.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발달장애인의 규모,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

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법 제18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19조의5(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절차) ① 제19조의4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외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9조의7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유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3의 서비스 지원대상 요건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유무 및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용과 기간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을 결정한다.

제19조의6(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① 시·도지사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에 준하는 기준(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한 자는 별

지 제9호의2의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제1호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의7(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이의절차) ① 제19조의5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지원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제1호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1. 공간 기준

가. 기관의 위치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공간의 구조 및 설비

- 1) 채광·환기·조명·온도·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 3) 활동공간은 이용자 4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4) 통합돌봄서비스 유형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관리되고 있을 것

2. 운영기준

- 1)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2)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이용자 또는 보호자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3) 제공기관의 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4)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력 기준

가.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4)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다. 가목부터 나목의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소정 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라. 휴직, 이직, 질병 기타 사유로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나목의 요건을 갖춘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험 있는 적절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발달장애인	이 름	생년월일	성별 []남성 []여성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이 름	장애인과의 관계
인적사항	주 소	[]보호자 []공무원 []기타()
		전화번호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V표시 하세요.		현재 이용 여부	제공/연계 가능 여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경제	공적급여(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현금지원(긴급구호비, 후원금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현물지원(후원물품지원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기타 경제적 지원(바우처, 이용료 감면, 신용회복 지원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고용	취업알선(구직상담, 일자리 소개, 창업지원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직업훈련(직업체험,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기타 고용지원(보호 작업장, 사회적 일자리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건강 및 안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기타 건강증진(알코올 중독, 위기 개입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안전지원(보호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이용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일상 지원	위생지원(개인위생관리, 이용·미용, 세탁, 청소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음식지원(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주거환경(주택 알선, 주거환경 개선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일상생활지원(활동 지원, 자원봉사 등)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주간개별)	[]이용중 []이용희망	[]가능 []불가능

재활 및 발달	치료 및 재활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행동발달증진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교육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평생교육, 보충적 교육 등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정보제공	의사소통지원 ①(알기 쉬운 정보 제공)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의사소통지원 ②(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생활정보제공(법률정보, 경제정보 등)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가족지원	가족지원(가족상담, 돌봄지원, 휴식 지원 등)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부모지원(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권익 옹호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성년후견 이용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자조단체 활동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여가활용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체육활동 지원	[]이용 중 []이용 희망	[] 가능 [] 불가능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견>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V 표시 하세요.	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현재 이용여부	지원자격 우무	지원가능 비용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돌봄 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그룹)서비스	[] 이용 중 [] 이용 희망	[] 유 [] 무	월 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서 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신청서 작성 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2.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 항증명서 3.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확인 동의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로 지명한 경우)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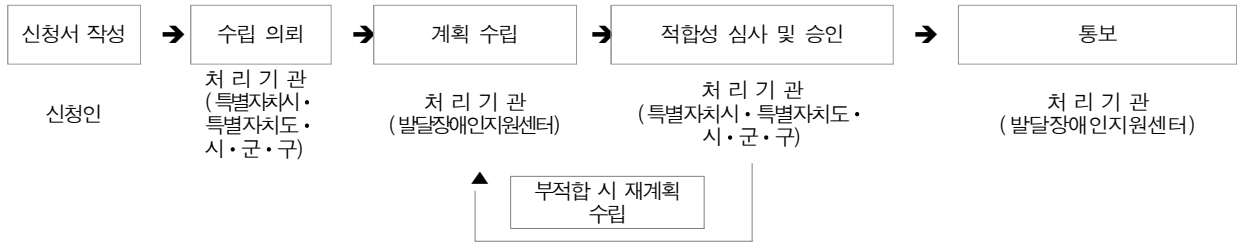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담당공무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①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④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법 제29조의3의 통합돌봄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u> <u>1.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행동문제 등으로 통상의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u> <u>2. 통합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발달장애인의 규모,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u>
<u><신 설></u>	<u>제19조의4(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법 제18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u>

<신 설>

청한다.

제19조의5(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절차) ① 제19조의4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외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9조의7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유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9조의3의 서비스 지원대상 요건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유무 및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용과 기간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통
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제공
할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을 결
정한다.

제19조의6(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① 시 ·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통합돌봄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
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
1호에 준하는 기준(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운
영기준, 인력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통
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

<신 설>

정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제1호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의7(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신 설>

· 군수 · 구청장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 · 보건 · 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이의절차) ① 제19조의 5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수급 자격 인정, 지원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면 지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별표 1</u>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 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u>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별표 제1호의2</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2 - 3348